「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9월 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9월 14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9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세정과장)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보완하고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고 신규 지정 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사전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성 여부 판단(안 제4조제1항)

❍ 안 제4조제1항 개정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안 제6조)

❍ 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 안 제7조의2 신설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항 신설(안 제9조제3호)

❍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신설(안 제11조의2제3항)

❍ 전문위원실 자구 수정(안제4조제1항: 평창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 제6조에 따른 평창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본 조례안은 금고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량의 불명확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보완하고, 협력사업비의 과다 출연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금고 지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며, 특히 금고 지정과 관련한 재량적 판단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금고 지정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음.

❍ 특히, 안 제4조제1항은 금고 신규 지정 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적격 여부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금고 지정 과정에서의 판단 절차를 보완하고, 안 제6조에서

관내에 금융 기관이 하나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는 삭제하여, 금고 지정의 방식과 관계없이 일정한 적격성 검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안 제7조의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의2제3항은 금고 선정과정에서 협력사업비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금고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금고 지정 과정의 재량 및 이해충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협력사업비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고 지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